

국 토 교 통 부

훈계요구·통보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사상구, 강서구, 금정구

관 련 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1. 1.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등¹⁸⁴⁾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2]의 기술능력,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 따르면 시·도지사¹⁸⁵⁾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건설업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¹⁸⁶⁾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

18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는 국토교통부, 타 지방자치단체,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에서 시·도 및 시·군으로 통보

18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186)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¹⁸⁷⁾는 건설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¹⁸⁸⁾를 부과¹⁸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18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지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188) 과태료는 횡수별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이며, 다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도록 규정

18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상구에서는 2015. 10. 28. 국토교통부로부터 주식회사 ○○○○○○(대표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 3개¹⁹⁰⁾ 시·군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등록기준 미달 4개 업체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통보받은 53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50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취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상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청장, 강서구청장, 금정구청장은

[통보] 등록기준 미달 혐의로 통보된 4개 업체 등 총 53개 업체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위한 절차를 각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90) 사상구, 강서구, 금정구